직인생략

(사)대한화장품협회
KOREA COSMETIC ASSOCIATION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여의도동, 금산빌딩)/전화 070-5057-4019/팩스 02-782-6659
담당부서: 정책연구실 부서장: 고정은 실장 담당자: 한종민 팀장 e-mail: jmhan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11-463호

시행일자: 2026.11.12.

수신자: 화장품 영업자 대표이사

참 조

제 목: 식품의약품안전처, 「화장품 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알림의 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-8405호(2026.11.11.)관련입니다.

3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'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자외선차단제의 표시 · 광고 표현에 대해 인체시험 또는 인체외시험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자외선차단지수(SPF 등)를 표시 · 광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화장품 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※ 동 개정 고시는 "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https://www.mfds.go.kr)→법령/자료→법령정보→제・개정 고시 등 또는 고시・훈령・예규)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1: 「화장품 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」일부 개정 고시 1부.
붙임2: 「화장품 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」고시 전문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